

# 오포자이 디 오브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문

### ▶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안내

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		서류제출 (당첨자)
3BL - 06.10 (목)	4BL - 06.09 (수)	2021.06.12(토) ~ 06.20(일) [9:30~17:30 (9일간)]
한국부동산원 (www.applyhome.co.kr)		서류제출 장소 : 오포자이 디 오브 견본주택, 경기 광주시 역동 213-3

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[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05.2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]

-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,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
### ▶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기본 필수서류

구분	확인사항	대상자
신분증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본인
주민등록표등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주민등록표초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의관계 포함하여 발급	
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-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대리신청은 불가)	
가족관계증명서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
혼인관계증명서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
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[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] ※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	
소득증빙 서류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/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※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	

### ▶ 추가 필요서류

구분	확인사항	대상자
주민등록표등본	-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	배우자
가족관계증명서	-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	본인 (또는 배우자)
임신증명서류, 출산증명서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/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포함하여 발급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	
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- 입양의 경우	본인
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
부적격 소명서류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	

### ▶ 제 3자 대리인 접수 시 추가구비서류

구분	확인사항	대상자
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- 본인(청약자) 발급 인감 증명서에 한함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 3자 대리신청은 불가)	청약자
신분증, 인장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	대리인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# 오포자이 디 오브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직증명서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</li> <li>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</li> <li>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</li> <li>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</li> <li>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/ul>	해당직장 세무서
	금년도신규 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직증명서</li> <li>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</li> <li>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 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</li> <li>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자(전년도 근로자)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</li> <li>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/ul>	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직증명서</li> <li>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/li> <li>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/ul>	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</li> <li>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,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</li> </ul>	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</li> <li>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/ul>	세무서
	간이과세자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</li> </ul>	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</li> <li>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/ul>	국민연금공단 세무서
	법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</li> <li>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</li> </ul>	세무서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</li> <li>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</li> <li>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/ul>	해당직장 세무서	
국민 기초생활 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/li> </ul>	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</li> <li>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,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</li> <li>※ 위 서류가 없을시,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</li> </ul>	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사업자 확인각서(2020.01.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</li> <li>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	견본주택 비치	

※ 상기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5.20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합니다.  
 ※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
문의전화 : 1644-0150